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지침의 개정 방향

오동일^{1*}

¹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금융경영학과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Accounting Stipulations of The Long term Care Facilities

Dongil O^{1*}

¹Department of Finance and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요 약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적용 기관과 미적용 기관이 혼재되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나 장기요양보험법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시설정보시스템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자료 제출의 강제적 의무도 없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상태와 경영실태와 관련된 신뢰성있는 회계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회계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알아보고 회계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실태를 반영하여 단기적으로는 복식부기기준의 회계기준과 단식부기 기준의 두 가지 회계기준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적절한 재무보고를 위해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세 가지의 이익처분항목을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총당부채 계정의 도입과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회계 기준을 도입하였다.

Abstract The current accounting for the long term care facilities are enforced by either financial accounting stipulations of social welfare legal entity or the guiding principle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law. In addition, some facilities are not eligible to access to the Korea 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system and even don't have any obligation to report financial information. Thus financial position and performance of activities are not well known to the interested part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way how to improve the current accounting stipulation of the long term care facilities. In conclusion, we should introduce the accounting standards based on the double entry system but on other aspect, also more simplified financial statement based on single entry system for smaller facilities. Also we should introduce three important appropriation accounts for the net income of institution which matches GAAP. For a successful plant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visions, government subsidy account, depreciations concept.

Key words : Accounting standard, Accounting stipulation, Long term care facilities, National insurance system, Not for profit organization, Social welfare legal entity

1. 연구배경 및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elderly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도입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근거해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된다.[1]

이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전부터 운영되던

본 논문은 2013년도 상명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Dongil O (SangMyung Univ.)

Tel: +82-41-550-5323 email: odongil@smu.ac.kr

Received October 10, 2013 Revised (1st November 29, 2013, 2nd December 23, 2013)

Accepted February 5, 2014

기관과 새로운 기준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혼합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설립주체도 비영리법인, 개인, 영리법인 등으로 흩어져 있어 관련된 규제와 법규도 상이하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회계보고와 관련하여서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따르는 기관과 따르지 않는 기관이 혼재되어 있다.

개인이 설립한 재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라 세무보고 목적을 위해 세무사 등에 자료를 일괄전달하고 세무사 등은 일반적인 소득세 신고 방식에 따라 자료를 정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개인 재가의 경우에는 아예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전환하여 세무상 비과세혜택을 받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지만 회계정보의 산출과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시장진입이 늘어남에 따라 입소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가마저도 회수되지 못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요양보호사 등 인건비 수준도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등 시장과 기관에 대한 투명한 회계정보가 산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즉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2]과 장기요양기관회계처리지침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적용 기관과 미적용 기관이 혼재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2012년 8월부터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개인,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시설은 회계자료의 지자체 제출의무 등이 발생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회계관리가 강화되나 개인, 영리법인이 개설한 재가기관은 시군구 등에 회계자료 제출의무 없고[3] 단순히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지침의 적용만을 받아 회계 보고의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지침은 강제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어서 회계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기관의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보다 간편한 양식의 회계관리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발생하고 있다. 즉 개인 재가의 경우 지침을 따라야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상태이고 지침을 따르는 경우에 얻게 될 편익도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공시를 강화하며 재무상태와 사업활동 성과보고에 대한 틀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적합한 회계기준과 계정을 제시함으

로써 추후 회계프로그램의 개발과 정부가 운용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막대한 정부재원이 투자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정상화와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적립금과 관련된 규정을 새로이 제안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정부보조금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회계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과 관련된 회계기준이 교수, 연구원 등 학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연구된 경우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기업회계기준의 정립은 한국회계연구원과 같은 전문기관이 주로 정립하여 왔다는 점과 해당 분야의 회계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회계이론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의 특성과 실무흐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회계기준 설정시 많이 참조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도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회계가 이루어지거나 비영리기관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장기요양사업이 우리처럼 전국적인 보험제도로 운영되지 않고 자선, 기부, 본인부담 등으로 재원이 확보되고 통일적인 규제기관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과 관련된 회계원칙은 오래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1980년 SFAC No.4에서 비기업(nonbusiness)의 회계기준의 기초를 제공하였다.[4] SFAC No.4의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목적(1980)”를 통해 비영리조직은 비영리조직체의 자원은 출연에 의해 조달되며, 출연자는 출연의 대가로서 경제적 효익을 얻거나 그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창출된 이익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배당될 수 없고 지분이 없으므로 이를 매각, 교환, 상환할 수 없으며, 청산 시에도 잔여지분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SFAS No.93, SFAS No.116에서는 비영리조직(not-for-profit organizations)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기부, 후원 등으로 자금이 조달되므로 제공된 자금의 원천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내용, 자원의 투입 및 그 성과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조하였다.[5],[6],[7] 가장 최근 발표된 SFAS No.164에는 비영리 조직 간 인수 합병시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한 바 있

다.[8]

한편, 2003년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라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였으나 회계기준 도입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실무적인 비판이 많아 이를 준용하는 비영리법인은 적은 실정이다.[9] 한편, 이동규는 우리나라 정부회계와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관련한 자료조사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의 회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의 소개와 비영리회계의 특징을 학술서적 형태로 제시하였다.[10] 최중윤(2013)은 공익법인의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기업과 상장기업의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자산구성의 특징을 제시하였다.[11]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비영리조직과 관련된 일반론적인 연구로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 연구라고 보기는 힘들다. 김일섭(2010)은 다양한 비영리기관의 재무제표와 FASB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공식적인 회계규정이 없는 비영리단체들의 재무제표 작성방법서 모델을 제시하였다.[12]

한편,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기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는 더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기현희(2005)는 사회복지법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예산통제시스템을 강조하는 정부회계적 성격을 비판하였다.[13] 강태성과 이성균(2009)은 사회복지법인의 재무제표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리조직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 오동일(2012)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처리 기준의 초안을 제시하고 재무제표의 유형과 작성방법, 회계기준의 정착화방안을 제시하였다.[15]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영리법인 회계연구나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관련 선행연구들과 구분된다.

첫째, 국내의 몇 가지 선행연구들이 광범위한 비영리기관에 대한 일반론적인 이론이나 회계규정에 관한 연구인 반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규정으로 적립금과 관련된 내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립금의 종류와 내용,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계기준의 제정 주체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한다. 넷째, 수가산정시 많은 논란이 되는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회계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다섯째, 회계기준은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의 장기요양기관의 경영규모, 이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식부기의 단순화된 두 가지 수준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장기요양기관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실무적인 적용방식과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 장기요양기관 회계 규정의 체계 및 문제점

3.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성격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2012년 9월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개정됨.)의 주요한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결산 보고서 인터넷 공시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약에 관한 원칙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케 함으로서 보조금 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후원금 관련 보고 주기 개편과 더불어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여 업무 편의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회계규정은 2012년 8월 이전부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어 왔던 비영리법인과 2012년 8월부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고 있는 개인, 영리법인 이 설립한 장기요양시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회계지침이 적용되는 개인, 영리법인이 설립한 재가기관으로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2012년 9월부터 시설, 비영리법인 개설 재가기관은 정부가 회계보고를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회계정보를 보고하는 등 회계관리가 강화되거나 개인·영리법인 개설 재가기관은 회계자료 지자체 제출 의무 없어, 여전히 회계관리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상태다.

재가기관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이해가 낮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적용대상도 아니어서 회계처리 방법을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있는 규

정은 아니어서 회계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영리법인에 대해 주로 적용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은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과 문제점이 있다.

첫째, 비영리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회계규정이다. 재무회계규칙은 기본적으로 비영리조직의 회계로 정부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의 관리와 집행에 초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완전한 기금회계의 형태는 아니지만 출연자의 의도에 따라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위한 감독과 규제가 행해진다는 점에서 기금회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사회복지법인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원가 측정,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과 운영을 위한 활동성과의 측정에는 미흡하다.

둘째, 예산회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주요한 운영재원이 정부보조금과 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므로 지원금 수입이 지정된 목적으로 지출(사용)되고 있는 지가 주요 관심사가 된다. 그러므로 공공성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제도와 사후 확인을 위한 결산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산회계의 성격을 지닌다. 예산회계는 수탁책임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장기요양기관의 최소한의 이익 창출을 통한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불완전한 회계기준이다.

셋째, 이익 등 사업활동성과에 대한 측정이 부족하다. 사회복지법인은 기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보조금이나 기부금 등에 의해 운영되고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규범적 목적을 위해 일방적인 소비활동이 발생하므로 이익에 의한 성과측정보다는 현금의 잔액의 유지와 관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비영리조직의 수입원이 정부보조금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입(예를 들어 장기요양기관의 보험급여수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기 위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최소한의 이익획득능력과 재무상태가 중요한 과제가 되므로 이익 측정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기본적으로 자산의 용역잠재력의 감소와 같은 감가상각제도 관련 회계가 도입되어 있지 못하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예산회계를 바탕으로 일부 기금회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하며 자산의 용역잠재력의 연속적인 감소 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감가상각비와 같은 주요 비용항목이 반영되지 못하고 단순한 현금흐름만을 측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수입은 자원의 소비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과 감가상각비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소비된 자원의 가치만큼 별도의 보상을 받는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감가상각회계는 불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복식부기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금주의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회계는 예산회계, 기금회계, 재정지원 기관에 의한 감독과 규제로 인해 현금주의 단식회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주의 단식회계는 처음 사용은 간단하나 원인과 결과의 연결, 기간간의 변동, 중요한 경제적인 사건의 발생, 성과의 측정과 자원의 소비 등 급증하는 신용거래를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금주의 단식회계는 특별한 회계지식이 없어도 현금의 수입과 지출만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하므로 한편으로는 용이하고 발생과 이연이라는 발생주의 고유의 판단 문제가 없어 규제 기관 입장에서는 용이한 인식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우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로 정보처리업무량이 줄어들고 복식부기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량이 단식부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단식부기의 장점은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간단하게 보이는 단식부기가 회계의 여러 가지 측면을 반영하지 못해 거래 유형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3.2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기준의 성격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회계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영리법인이 설립한 재가만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시설회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세입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고유항목에 대한 세입예산과목을 구분하여 예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세입처리는 지자체 보조금수입과 공단지급액, 본인부담금을 세입항목에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세출처리는 세입(지자체보조금, 장기요양사업수입)과 무관하게 세출은 통합 관리하되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후원금 등 별도로 정해진 항목 내에 서만 지출 가능한 세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회계처리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에 따른 재무제표, 구체적인 회계계정에 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회계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입, 세출, 정산과 관련된 일부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넷째, 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금 등 준비금과 관련

된 규정과 잉여금의 법인전출 및 병설 재가 요양기관의 수익금 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이 규정은 잉여금과 이익처분과 관련된 회계 개념과는 상충되고 있다.

4.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지침 개정 방안

4.1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의 기본 방향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은 다수의 동의와 권위있는 지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비록 비영리조직에 대한 회계기준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이 기본 골격이 되어야 한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도 경제적 거래에 대해 회계행위를 측정하고 보고함에 있어 다수의 동의가 있으며 회계전문가의 권위있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에서도 비영리조직의 회계가 권위있는 지지를 받기 위해 FASB내에 비영리회계전문위원회(NAC)를 두고 회계가이드라인,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회계기준 연구 과제추진, 비영리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회계 관행의 변화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장기요양기관과 관련된 회계규정은 회계전문가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와 통제를 위한 규정이거나 지침과 같은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은 전적으로 정부보조금,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유지되는 순수한 형태의 비영리조직이 아니라 제공된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수급자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징수하는 형태의 영리적 조직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 즉 정부보조금이나 기부금의 비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과거에 비해 보험급여수입의 비중이 매우 커지고 정부보조금의 비중 등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의무에만 충실한 회계규정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회계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첫째, 장기요양기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복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회계정보가 생산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

계규칙의 단점을 해결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의 성과와 질을 평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회계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설립 장기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영리조직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원을 조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보고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이런 측면의 회계보고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자원을 교환하는 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한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반영하더라도 장기요양기관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최소한의 감독과 규제에 의한 회계보고 이외에 시장과 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회계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원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조달, 그리고 우수한 기관과 열등한 기관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째, 개인, 영리법인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은 이익발생시 배분하고 있으며 해산 시 잔여 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개인이나 영리법인에 귀속되고 자율적인 배당을 억제할 방안이 없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자산을 자유롭게 매각 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비록 개별 기관이 소득세 등의 문제로 법인격 없는 조합의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본질은 양질의 급여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를 통한 투자자금의 회수에 있으므로 최소한의 영리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곱째, 현재와 같은 단식부기 현금주의 하에서는 활동성과를 측정하는 경우 현금흐름의 시점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나 자산의 평가손익 등과 같이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항목을 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손익의 보고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현금유출입과 관계없이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가져온 거래가 발생하면 그 기간에 수익 또는 비용을 인식하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4.2 회계기준의 이원화 도입 필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재가로 나누어져 제공하는 급여서비스 유형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도 차이가 있고 설립주체도 비영리법인, 개인, 영리법인, 지자체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회계기준도 다양한 유형에 맞추어 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은 설립주체가 비영리법인, 개인, 영리법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비영리성과 영리성이 혼동되어 있

는 형태이다. 나아가 장기요양기관이 비영리조직이라고 간주한다하더라도 FASB나 KASB의 의견처럼 비영리조직체의 재무보고목적은 기업회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이용자 및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규모에 따른 회계기준의 차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복식부기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초 거래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때 거래의 내용을 파악해 차변항목과 대변항목을 구분해 주는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시설장을 중심으로 소수의 인력으로만 운용되는 기관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추정이나 평가 등의 과정이 없이 현금의 수입과 지출만으로 거래를 기록하는 단식부기가 오류와 행정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은 복식부기 발생주의로 하되 일정한 기준이하의 기관에 대해서는 현금주의 단식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도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첫째 방안은 단식과 복식의 선택을 기관의 재량에 자유롭게 맡기되 복식을 선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기관으로 하여금 한계수익과 한계비용, 그리고 정보의 효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회계기준을 선택하게 하되 일반형인 복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전 정치 과정과 메카니즘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방안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 복식과 단식을 나누는 방안으로 일정한 규모이나 급여수익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매년 단식과 복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유형이 달라 혼동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회계정보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낮아지며 회계 관리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속된 일정기간은 반드시 동일한 회계기준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변경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 회계규정의 법적 성격 정비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요양기관회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근거법을 제정하고 근거법의 위임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회계기준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이 기업회계기준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위 근거법률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장, 장기요양기관 제

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등에 이와 관련된 별도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기관회계기준을 보건의복지부령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적 규범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처벌 규정을 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경우는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하고 있고 한국회계연구원이 이러한 위탁을 근거로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 회계기준의 경우도 회계연구원과 같은 전문적인 회계연구기관에서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제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회계연구원과 같은 전문적인 회계기관이 장기요양기관회계기준과 같이 구체적인 업종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회계전문가를 초빙해 과업그룹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비록 회계기준이 회계연구원과 같은 회계전문기관과의 협의 하에 보건의복지부령에 따른 규칙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의 유용성을 확보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바탕으로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회계기준 운용과 관련하여 2년 정도의 시범사업을 수행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4.4 필수 재무제표의 확정과 도입 필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제표는 장기요양기관의 제한된 자원을 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화폐단위로 측정하여 보고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는 복식부기를 따르는 경우에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차대조표의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과 장기요양기관의 계정과목을 반영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경우 큰 무리는 없으나 수지계산서의 경우는 수입금액과 지출금액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현금의 수지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수지계산서의 양식이 정보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대응시키기 보다는 수입과 지출을 나열하여 보여주는 방식이다. 수지계산서의 경우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재산조성비라는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발생주의 회계의 감가상각제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대차대조표와 수지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로 볼 때 수지계산서는 손익계산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수입과목과 지출과목에 과년도 수입과 과년도 지출, 전입금, 전출금, 적립금, 예비비, 이월금, 재산조성비, 상황금 등 회계적 측면에서 파악할 경우 수익과 비용이 아닌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활동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발생주의관

점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대차대조표와 수지계산서의 잉여금과 당기잉여금, 적립금과 이월금 등의 개념이 상호간에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회계기준은 복식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복식회계에 맞게 수정하고 규모가 영세하거나 인력이 부족하여 단식부기를 하는 경우에는 단식부기에 맞게 간단한 결산개요표 정도로 재정리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의 경우와 달리 주식회사 형태가 거의 없고 입소의 경우 비영리법인, 재가의 경우 개인 시설이 주된 설립주체가 되어 주식의 발행,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 자본의 소각, 이익잉여금의 자본 전입, 유상증자 및 감자 등의 절차가 없어 자본변동표를 기본재무제표로 두기보다는 영여금의 처분과 귀속, 그리고 관리를 위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장기요양기관의 재무제표로 포함한다.

장기요양기관 중 단식부기를 채택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없고 단지 결산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결산개요표만 있다.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현금의 수입과 현금의 지출을 중심으로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형태의 활동보고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결산개요표로 칭하는데 복식부기의 현금흐름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수지계산서와 유사한 형식으로 하되 장기요양기관의 계정과목 특성을 반영한 장부이다.

4.5 적립금 계정의 정비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요자금의 유보를 위한 적립금 확보와 관리를 위한 회계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적립금은 회계규정에 따라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과 기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적립하는 임의적립금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행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는 “특정목적사업의 예산에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적립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노인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으로 목에 운용충당적립금,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준비금으로 사용하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즉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 대해서만 두 종류의 적립금이 언급되어 있어 타 사

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적립금의 성격과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은 불분명하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회계처리 지침에는 운영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운영충당적립금’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상당한 지출이 소요되는 등 적립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사유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자 적립하는 것으로 설비 관련 장비, 파손 및 내구 연한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무기기 등에 지출한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시설 개보수, 내·외부 도색 등 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적립금이다.

이와 같은 회계지침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적립금을 이익(단식의 경우에는 잉여현금)이 결정되고 난 후 이익의 처분이나 잉여를 통한 적립의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전적으로 설계하는 예금이나 적금(기금)으로 파악하고 있다.

둘째, 적립금의 적립이 타당한 지 아닌지를 판단할 아무런 기준이 없고 비용 지출 이전 또는 동시에 이루어져 당해 연도의 인건비, 운영비 등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즉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서 적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비용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셋째, 적립금의 설정이 오히려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의 투자 등 필수적인 비용이나 지출을 줄이고 나아가 모여진 적립금으로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넷째, 적립금은 미래에 대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단순한 준비이므로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혼동되게 하여 손익산정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재무회계지침의 적립금 회계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적립금을 이익의 처분항목으로 규정하고 이익처분의 실질적인 효과 담보하기 위해 적립예금이나 기금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요양기관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당기활동순이익을 더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구하고 이익잉여금은 인건비안정화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적립금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인건비안정화적립금은 종사자 인건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정하며 해당 시설로부터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의 1/10 이상의 금액을, 전년도 인건비총액의 1/2에 달할 때 까지 적립하며

인건비안정화적립금은 종사자 인건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넷째, 운영충당적립금은 인건비안정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 시설, 장비, 비품, 사무기기 등의 일반적 수선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지출(수익적 지출)이나 타 세출예산 과목으로 당해연도 지출이 힘든 항목에 대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도록 한다. 다섯째, 환경개선적립금은 시설의 증설, 개조, 냉난방장치의 부착, 엘리베이터의 설치, 대수선 등과 같이 지출의 효과가 길고 내용년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출(자본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다.

환경개선적립금은 인건비안정화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 적립함 그리고 이렇게 적립금을 처분한 후에 법인전출금, 병설기관전출금으로 전출하거나 개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자금의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관리함으로써 적립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적립금 적립시 원금손실(조기해지시 제외)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금융상품)을 가입하되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발생시 큰 손실없이 현금화가 가능해야 한다.

둘째, 장기요양기관이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한 기금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며 그 목적에 따라 인건비안정화기금, 운영충당기금, 환경개선기금으로 한다.

셋째,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피보험자를 자연인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보험자는 법인의 대표자(설치자)로 하되, 자연인인 대표자에게는 상품과 관련하여 이익이 귀속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적립금을 설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장부를 만들고 각각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한다.

다섯째, 장기요양기관이 특별회계를 적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영충당기금(예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운영충당적립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면 된다.

4.6 전출금과 전입금

전출금은 타 회계단위로 자금을 유출해서 이동시킨 경우 해당 금액을 나타내는 용어이고 전입금은 그 반대로 타 회계단위로부터 유입되는 금액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재무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에만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제하기 위해 인건비안정화 적립금 등 법 규정에 의한 강제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장기요양기관의 자금이 타 회계단위로 전출된다고 하

더라도 이는 이익의 처분으로 손익계산시 비용은 아니다. 따라서 현행의 수지계산서상의 장기요양기관의 전출금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가 아니고 전출로 인해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반대급부가 없으며 이익의 결정요소가 아니라 이익의 처분항목이 되어야 한다. 전출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모 법인으로 전출된 법인전출금은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운영이나 시설 등 자본 확충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둘째, 회계기준 정립과정에서 전출의 범위를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이외의 동일한 운영주체가 둘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잔여잉여금은 운영 중인 타 장기요양시설로 전출할 수 있으므로 구분경리간전출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다만, 구분경리간전출금은 전출의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오히려 전출금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이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병설하는 경우 잔여잉여금은 병설 기관 간에 전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병설기관전출금이 필요하다.

넷째, 전입금은 전출금의 반대 개념인데 장기요양기관의 전입금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부·회계규칙의 전입금과 동일한 종류의 전입금을 규정함. 전입금은 장기요양기관이 무상으로 자원을 이전받는 것으로 법인 전입금과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법인전입금은 무상으로 자원이 이전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인으로 부터의 전입금이 법인으로의 전출금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영업활동이외의 수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

4.7 정부보조금 회계 규정의 정비

장기요양기관 중 비영리법인에 의해 설립되거나 지자체로부터 수탁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이나 장비 등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라 감가 상각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장기요양기관협회 등에서는 수 가산정시 정부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도 취득가액 전액을 감가상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정부보조금 혜택과 감가상각비 인정의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이다.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지침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

즉 현금주의 단식부기에 따름으로써 감가상각 인식 자체가 없는 실정인데 이와는 별도로 수가 산정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가조정율을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정부보조금은 토지나 그 밖의 자원과 같은 비화폐성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정부보조금은 그 성격에 따라 자본보조금과 경상보조금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또한 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또한 우리나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의 실무지침에 의하면 자산취득에 사용될 정부보조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고 하여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점에서 자본조정의 증가항목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면 정부보조금을 받은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자본조정항목으로부터 자산차감계정으로 대체되면서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어 정부보조금의 유입과 사용에 따라 순자산이 변동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자본조정항목으로 처리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장기요양기관회계기준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자산관련보조금은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회계기준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와 마찬가지로 지출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또한 소규모 수선비와 같은 수익적 지출은 그 지출의 효과가 당해연도에 그치므로 지출이 이루어진 연도의 비용으로 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와 같은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의 효과가 차년도 이후에도 미치므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내용년수동안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비영리조직의 경우 시설의 진부화나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포화상태가 되면 정부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자산을 대체하고 있어 조직에서 대체자금을 마련하거나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적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영리조직은 영업활동에 따른 투자자 이익의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므로 취득원가의 배분을 통한 역사적으로 순수비영리조직의 경우도 유형자산을 구입한 경우 구입시에 바로 전액 비용 처리하거나 전혀 감가상각을 하지 않거나 일부의 경우에는 영리조직과 같이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단식부기 현금주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무시하고 회계처리하는 방식은 자원의 용역잠재력의 감소를 일정기간동안 체계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회계의 일반원리에도 맞지 않아 장기요양기관의 경제적 실질을 나타내지 못하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에서는 자산의 용역잠재력에 따른 감가상각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회계기준을 설정되어야 한다.

5. 결론 및 추후 연구 방향

장기요양기관회계기준은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외부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이다. 현행의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아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회계지침 또한 재가 및 시설의 수탁보고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이긴 하나 그 내용이 빈약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계기준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재무상태와 경영성적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기관회계기준이 갖추어야 할 조건과 현행 규칙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의미있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매우 영세하고 회계 능력이 부족한 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복식부기,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주의, 단식부기를 사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의 이원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인 재무제표의 종류, 양식, 세부 항목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이익의 처분과 관련된 준비금 계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익의 유보와 이익의 처

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용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을 바탕으로 이를 실제 요양기관 현장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은 시설과 재가, 그리고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회계기준의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실무적으로는 현재 예산 및 감독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단식부기 위주의 체계를 복식부기 구조로 바꾸어 장기요양기관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및 회계정보를 이 시스템에서 액세스하고 쉽게 가공 변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로 상이한 시스템을 전환하여 각 각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과 가공이 쉽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산출된 회계정보를 이용해 매년 장기요양보험수가 산정에 충분한 정보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생성된 정보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 보험자, 수급자, 정부 모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가산정의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재무제표 등 정기적으로 수집되는 정보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매년 수집해야 한다면 유용성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의 개정 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범 사업 시에 회계기준에 따른 정보의 질을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정부정책 수립 시에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National Health Insurance, Elderly Welfare Law, 2012.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Accounting Stipulations of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 2012. 4.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Amendment of the Accounting Stipulations of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 2012. 8.
 [4] FASB, SFAC No.4,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by Nonbusiness Organizations, 1980.
 [5] FASB, SFAS No.93, Recognition of Depreciation by Not for Profit Organizations, 1987.
 [6] FASB, SFAS No.116, Accounting for Contributions Received and Contributions Made, 1993.
 [7] FASB, SFAS No.117, Financial Statements of Not-for-Profit Organizations, 1993.
 [8] FASB, SFAS No. 164, Not-for-Profit Entities: Mergers and Acquisitions—Including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142, 2009.
 [9] Korean Accounting Standard Borad, Presentation and Disclosure Regul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 of Not for Profit Organization, 2003.
 [10] Donggyu Lee, Governmental and Not for Profit Organization Accounting, SunHak Publishing, 2006.
 [11] Jongyoon Choi, A Study on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Nonprofit Corporations,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Vol. 49, 2013, 6: 103-124.
 [12] Ilsup Kim, Draft of making Financial Statement of Not for Profit Organization, Deloitte, Deloitte Anjin LLC, 2010.
 [13] Hyunhee Ki,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Accounting for Social Welfare Corporations,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Vol.13,2005.10, 165-184.
 [14] Tae-Gyun Kang, Sung-Gyun Lee, A study on the Effective Accounting system for Social Welfare Corporations,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Vol.26,2009. 06. 109-128.
 [15] Dongil O, An Establishment of the Accounting Standrds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2012.8.

오 동 일(Dongil O)

[정회원]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공학사)
- 1986년 2월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1991년 8월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1991년 9월 ~ 1992년 3월 : 삼일회계법인
- 2010년 3월 ~ 2011년 2월 : University of Windsor Business School Visiting Scholar
- 1992년 4월 ~ 현재 : 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금융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투자성과평가, 회계·월가산정, 병원경영, 정책설계